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수혜기업 1호 탄생

- 교육용 웹 콘텐츠 개발업체 와우엠지(대표 설용석) 최종평가 통과
- 지난 4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지원



(경영재기추진위원회 평가회의 전경)

벤처 기업협회(회장 백종진, KOVA) 산하 벤처윤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의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교육용 웹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와우엠지(대표 설용석, 37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사업성평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도덕성 평가를 모두 '우수' 하게 통과한 와우엠지는 벤처경영재기추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 을 받아 기보로부터 1억 원의 지원보증을 받게 된 것이다.

와우엠지(폐업당시 회사명, 와우인터랙티브)는 교육용 CD-타이틀 개발과 스포츠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2003년 벤처기업을 자진 반납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닷컴에 대한 미래 가치가 급증하면서 와우엠지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이 검증되지

벤처 패자부활제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이용안내

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자 마련한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 - 이하 재기지원제도) 개선안(근거 - 재정경제부 06년 9월 28일 발표 기업 환경개선대책)'에 따라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지원절차

-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의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을 거쳐 사업성 및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게 사업재기를 위한 신용회복과 사업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술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와우엠지와 설 대표는 재기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쳤다. 우선 사업 목표를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자체 개발한 250여 종의 제품을 보유하게 되었고, 제품 형태도 CD-타이틀에서 웹 버전을 위한 교재로 전환하였다. 또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을 펼친 끝에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현재 남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분할상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실패. 끝이 아닌 사회적 자산

와우엠지는 지난 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본 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설 대표는 “그동안 재기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던 중 본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나를 위한 제도구나 생각했다”며 “첫 수혜자가

된 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협회 전대열 상근부회장은 “우리 협회에서 제도에 의한 재기지원은 본 건이 첫 번째 사례이다. 그만큼 첫 수혜자가 탄생하기까지 난항을 겪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많은 기업가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본 제도의 평가방법은 신청, 서류평가(사무국), 사업성평가(기보 또는 신보), 도덕성평가(법무법인/회계법인), 최종평가(벤처 재기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보류 결정)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지원이 부결된다. 한편 사업성평가는 기술보증을 위한 평가절차 이상의 평가가 이뤄지며, 도덕성평가는 변호사 1명과 회계사 1명이 직접 투입될 만큼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가운데 경영활동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기업 대표(실패 당시 법인 대표)로 현재 재기 준비 중이거나, 사실상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대표.
 - 벤처확인(97년 이후)을 받은 후 일정기간(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벤처기업 대표
 - 폐업(청산절차를 밟은 기업인)
 - 부채규모와는 상관없이 신용에 이상이 없거나, 연체 등 정보등록자(구, 신용불량자)의 경우 총채무(개인채무 및 보증채무 포함)가 15억 이하인 기업인
 -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최종평가 승인을 전후하여 기업 설립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 제외대상
 - 사기, 횡령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의 당사자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기업인 제외
 - 기보법상 '보증금지기업' 조항에 저촉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 현재 채무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인)은 보증이 금지되므로 해당 기업인은 제외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

4. 신청기한

- 상시 접수로 매월 말일 마감(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접수)

5. 접수문의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
 - 전화 : (02)890-0631
 - 홈페이지 : http://www.kova.or.kr / 이메일 : jwmoon@kova.or.kr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구로디지털 1단지)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벤처유리위원회